과거 범죄사실을 일간지 웹사이트 내부 검색 엔진에 연동하는 것에 대한 잊힐 권리[1)]

1. 사건개요

스페인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엘 빠이스"(El País)는 1980년대 한 지면 기사를 통해 마약 밀매 조직의 해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에 고위층과 공무원의 가족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청구인 D.F.C.와 M.F.C가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에서는 이들의 성, 이름, 직업이 언급되었고, 이 조직의 수법과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보였던 약물 중독 증상도 다루어졌다. 한편 20년이 더 지나고, 2007년경 "엘 빠이스"는 웹사이트(www.elpais.com)에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2)]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이후로부터 "구글"(Google)과 같은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이트에 청구인들의 이름과 성을 입력하면, 청구인에 관한 과거의 뉴스 기사가 맨 먼저 검색되었다.

청구인들은 "엘 빠이스"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이름과 성을 이니셜로 대체하고, 필요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기사가 공개된 웹사이트에서 자신들이 검색결과로 연동되지 않도록(no fuera indexada como resultado de la búsqueda) 요구하였다. 그러나 "엘 빠이스"는 언론사의 정보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되고, 검색에서 연동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청구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1) 제1부 2018년 6월 4일 결정, 판례번호 58/2018.

2)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질이 떨어지거나 흩어져 일부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정보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항구적인 기록과 보존·이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서 보관하며, 자료 간의 관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이다. 두산백과사전 참조.

이후 청구인들은 “엘 빠이스”를 상대로 위의 요구와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청구인들이 모두 승소하였다. 2013. 10. 11. 바르셀로나 고등법원은 “엘 빠이스”에 대해 웹사이트 내부 검색 엔진 이용시 개인정보(청구인들의 이름과 성)의 연동을 금지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대해 “엘 빠이스”는 다시 한 번 이 사건 행위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점과 청구인들의 명예권, 사생활권, 개인정보보호권에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이 사건을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여기서 정보처리가 부정확했던(inveraz)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초기에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정보처리의 방법이 부적절했다(inadecuado a la finalidad con la que aquéllos fueron recogidos y tratados inicialmente)고 지적하였다. 시간적인 요소(factor tiempo)가 이 문제에 있어 중요한데, 어떤 정보처리가 초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어도, 시간이 경과된 후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청구인들이 공적 관련성이 있다거나 이 사건의 정보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엘 빠이스” 웹사이트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청구인들의 이름과 성을 삭제하는 것은 정보의 자유(libertad de información)의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고 비례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잊힐 권리”를 통해 당시 정확하게 발표된 정보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검열(censura retrospectiva de las informaciones correctamente publicadas en su día)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3]들을 인용하면서 디지털 아카이브가 정보 접근에 있어 공익을 충족하는바 정보의 자유에 의

3) Węgrzynowski and Smolczewski v. Poland (application no. 33846/07), 16 Jul 2013; Times Newspapers Ltd (Nos 1 and 2)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3002/03 and 23676/03), 10 Mar 2009.

해 보호되고, 그리하여 과거의 뉴스를 삭제하거나 변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엘 빠이스" 웹사이트 내부 검색 엔진 이용시 개인정보의 연동을 금지하는 것이 정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인터넷상 다른 검색 엔진으로도 과거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아카이브에 의한 정보가 청구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아니라고 판단하며 상고이유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2015. 10. 15.에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수적 무효소송(incidente de nulidad de actuaciones)[4]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부수적 무효소송의 특성과 방식을 감안할 때 이미 해결된 법적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2016. 2. 17. 판시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명예권과 사생활권(헌법 제18조 제1항[5]), 개인정보보호권(헌법 제18조 제4항[6]), 효과적인 사법보호를 받을 권리(헌법 제24조 제1항[7])의 침해를 주장하며 2016. 4. 18.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요지

(1) 이 사건에서는 ① 명예권과 사생활권(헌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권(헌법 제18조 제4항)과 ② 정보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d)[8]) 간의 충

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앞서, 일반법원에 기본권 침해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세계헌법재판동향」에 번역 및 소개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여러 결정들을 참조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결정으로 "공직자 부패를 폭로한 출판사의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세계헌법재판동향」 2015년 제2호, 77-82면)이 있고, 그 외에 "CCTV에 의한 교직원 징계처분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세계헌법재판동향」 2014년 제5호, 62-65면), "사법기관의 이유설시 의무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세계헌법재판동향」 2015년 제4호, 87-90면) 등이 있다.

5) 헌법 제18조: ① 명예권,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권, 초상권은 보장된다.

6) 헌법 제18조: ④ 법률은 시민, 개인과 가족의 명예 및 사생활과 이러한 모든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과학의 이용을 제한한다.

7) 헌법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적법한 권리 및 이익의 행사를 위하여 법관 및 법원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방어에 처하지 아니한다.

8) 헌법 제20조: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인정되고 또한 보호된다.
a) 사상, 이념 및 의견을 구두, 서면 내지 어떠한 다른 방법에 의하든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

돌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보기술의 사용을 통해 권리 보유자의 사생활이 공개될 때 더욱 부각된다. 예를 들어 특히 인터넷 사용이나 검색 엔진과 같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된 컴퓨터 수단은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예권, 사생활권(헌법 제18조 제1항)과 정보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d)) 간의 균형(equilibrios)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잊힐 권리"(derecho al olvido)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된다. 대중매체의 출연 혹은 오늘날 사용 가능한 컴퓨터 수단을 통해 정보의 자유의 보장이 광범위한 범위(alcance global)에 이르게 되고, 그 효과가 복합적인 형태로 (현재가 아닌) 과거에 대해서도 확대될 수 있다.

청구인들이 헌법 제18조 제1항과 동조 제4항을 원용하면서 주장하려는 바는 판례[9]에 의해 확립된 소위 "잊힐 권리"의 행사이다. 이 내용은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규정(GDPR[10]) 제17조[1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25일

---

b)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생산 및 장조

c) 학문의 자유

d) 어떠한 보급 방법에 의하든 정확한 정보의 발신 내지 수신. 법률은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양심조항 및 직업상의 비밀의 권리를 규정한다.

9) 유럽사법재판소 결정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EPD, Mario Costeja González (C-131/12), 13 May 2014. 헌법재판연구원,「세계헌법재판동향」 2014 제5호, 3-11면.

10)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공식 명칭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이다. 이 규정은 2016년 4월 14일에 채택되었다.

11) 제17조: 삭제권(잊힐 권리)

1. 개인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가 적용되는 경우, 부당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가진다.

(a) 개인정보가 수집된, 그렇지 않으면 처리된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b) 개인정보주체가 제6조(1)의 (a)호 또는 제9조(2)의 (a)호에 따라 처리의 기반이 되는 동의를 철회하고, 해당 처리에 대한 기타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c) 개인정보주체가 제21조(1)에 따라 처리에 반대하고 관련 처리에 대해 우선하는 정당한 근거가 없거나, 개인정보주체가 제21조(2)에 따라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d)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된 경우

(e) 개인정보처리자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삭제되어야 하는 경우

(f) 제8조(1)에 규정된 정보사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된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가용 기술과 시행 비용을 참작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주체가 그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링크, 사본 또는 복제본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을 고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

(b) 개인정보처리자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부터 시행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상기 규정은 특정 기반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derecho a la supresión de los datos personales)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는 정보기술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권(헌법 제18조 제4항),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8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계되는 개인의 보호에 관한 조약'[12]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듯 잊힐 권리는 정보기술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권의 측면을 담고 있으면서, 명예권과 사생활권 - 내적인 것과 관계되는 자율적인 권리 - 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2) 잊힐 권리를 개인정보보호권에 내재하는(inherente) 권리로서 기본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기본권의 한계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292/2000 결정[13]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는 무제한적이지 않다. 헌법에서 구체적인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다른 기본권과 같이 공권력에 의한 결정을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권 및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법적 이익에 기초하여 한계를 도출해야 하며, 이는 헌법의 통일성을 위한 요청이기도 하다."고 설시하였고, 이후의 결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14] 이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derecho de autodeterminación sobre los propios datos personales)의 한계로 정보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d))를 확인할 수 있다.

(3) 정보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제도 하

또는, 공익을 위해서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을 행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c) 제9조(3)뿐만 아니라 제9조(2)의 (h)호 및 (i)호에 따른 공중보건 분야의 공익상의 이유인 경우
(d) 제89조(1)에 따른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권리가 그 처리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 법적 권리의 확립,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한 경우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1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규정 번역문 참조.

12)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reaty No. 108).

13) 전원재판부 2000년 11월 30일 결정, 판례번호 292/2000.

14) 전원재판부 2013년 1월 31일 결정, 판례번호 17/2013.

에서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롭고 다양한 여론의 존재와 형성을 보장(garantía de la formación y existencia de una opinión pública libre y plural)하는 것도 포함한다.

정보의 자유는 헌법 제18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인격(personalidad)에 관련된 권리보다 우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정보가 여론 형성을 위해 진실하고 중요하고(veraz y relevante), 공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정보의 자유의 특성은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no con carácter absoluto) 사안별로(caso por caso) 다를 것이며, 헌법 제18조 제4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의 결정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먼저, 뉴스의 보급에 따른 해당 권리 보유자의 사생활권에 대한 영향을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가 가지는 가치(el valor del paso del tiempo)이다. 다음으로, 모든 인터넷 사용자에 대해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정보문서의 디지털화가 가지는 중요성(la importancia de la digitalización de los documentos informativos)이다.

(4) 살피건대 이 사건 재판소원의 청구를 부분적으로 인용(estimación parcial)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뉴스와 같은 정보를 디지털 아카이브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분명 이 뉴스의 내용은 약물 중독과 마약 밀매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여전히 공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정보의 객관적 이익(interés objetivo)이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그 당시에나 지금도 공적인 인물이 아니고, 청구인들의 명예와 사생활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sulta indiferente).

해당 뉴스가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거의 사실에 대해 헌법적으로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현재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적 토론(debate público)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으로부터 30년이 지난 뉴스를 다시 전파(retransmisión)하

는 것은 디지털 아카이브에 의한 공개에서 더 나아가 오늘날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formación de la opinión pública libre)을 위한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 특별히 이 뉴스를 통해 공개된 사건에서의 범죄가 심각하다거나 그 당시 사회에 큰 영향력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긴 시간의 경과로 인해 사건 초기에 제기된 관심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사건에서 공개된 정보(청구인들의 약물 중독과 범죄의 가담)는 그 특성상 개인의 사생활과 직업 생활에 대해 강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명예권과 사생활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는 제공하려는 뉴스의 현재의 가치가 결여된 만큼 비례적이지 않은바, 언론의 아카이브로서의 기능은 제한되어야 한다.

(5)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청구인들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확인하였음에도,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방법이 비례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즉,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웹사이트 내부 검색 엔진 이용시 청구인들의 이름과 성에 따른 뉴스 연동(indexación)의 금지를 인정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검색 엔진의 비활성화를 통해 개인에게 침해될 수 있는 정보의 대중적인 접근을 막는다면, 정보 검색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에 따라 삭제를 주장하는) 가장 적극적인 자들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청구인들의 이름과 성을 삭제하거나 이름과 성을 이니셜로 대체하는 것은 언론의 아카이브 내용을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형량의 결과로, 어느 하나를 우위에 놓고 고려하더라도 다른 기본권의 내용이 무의미해질 수 없으며(no queda vacío del contenido), 전자에 해당되는 기본권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후자의 기본권은 반드시 필요한 정도로만 제한되어야(debe ser sacrificado sólo en la medida estrictamente necesaria para salvaguardar la efectividad del primero) 한다.[15)]

이 사건에서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연관해서 청구인들의 적절한 사생활권이 보장(헌법 제18조 제1항과 동조 제4항)되기 위해 요청되는 정보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d))의 제한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오늘날 정보 사회에서 디지털 아카이브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엘 빠이스" 웹사이트 내부 검색 엔진에서의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의 연동을 금지하는(prohibición de indexar los datos personales) 것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뉴스의 보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수단에 의해서만 청구인들을 식별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내는 것이 제한될 것이다. 사실 공적 관련성이 없는 청구인들의 이름과 성을 검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더라도, 웹사이트 내부 검색 엔진을 통해 뉴스를 찾고 보급하는 기능은 유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를 주제별(temática), 시간적(temporal), 지리적(geográfica) 또는 기타의 분류로 검색하여 찾아낼 수 있다.[16] 따라서 청구인의 개인정보는 필요하지 않고, 이러한 개인정보가 뉴스의 가치를 더하지 않으며, 성과 이름의 이니셜로 충분하다.

3. 주문

청구인 D.F.C.와 M.F.C.의 청구를 부분적으로 인용한다.

첫째, 청구인들의 명예권과 사생활권(헌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권(헌법 제18조 제4항)의 침해를 확인한다.

둘째, 청구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2015. 10. 15. 대법원 판결에서 "엘 빠

15) 제2부 1990년 11월 12일 결정, 판례번호 171/1990; 제2부 2002년 5월 20일 결정, 판례번호 121/2002; 유럽사법재판소 결정 Tietosuojavaltuutettu v 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C-73/07), 16 Dec 2008; 유럽사법재판소 결정 Volker und Markus Schecke and Eifert (C-92/09, C-93/09), 9 Nov 2010; 유럽인권재판소 결정 Mouvement raëlien suisse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16354/06), 13 Jul 2012.

16) 동일한 취지로, 유럽인권재판소는 다른 수단의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비례의 원칙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설시하였다. 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48876/08), 22 Apr 2013.

이스" 웹사이트 내부 검색 엔진에서의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청구인들의 이름과 성)의 연동을 금지하도록 한 것(2013. 10. 11. 바르셀로나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만 및 2016. 2. 17. 대법원의 부수적 무효소송 판결을 무효로 선언한다.